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범정의무연수 부과 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01)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교육부장관 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2

[참고자료]

1. 개별 법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의무연수 현황(2025.12.기준)	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1. 13.
3. 회 부 일 : 2026.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 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 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법정 의무연수”를 반영하도록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법정 의무연수 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수과정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2조의2(법정 의무연수 영향 사전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 실시, 연수 횟수, 연수 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교육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6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¹⁾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이나 상위직급의 교원 자격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과, 이와는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적 이슈 대응 또는 정책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수의무가 부과되는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제6장(연수)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11. 9. 30.]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그런데 최근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법정 의무연수를 신설·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부담이 증가하였으며(2025년 말 기준, 총 18개 과정, 연간 이수시간 26시간 이상)²⁾,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법정 의무연수에 대한 부담이 교육공무원 본연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는 물론, 수업준비 또는 학생 지도에 대한 집중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³⁾

□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법정 의무연수를 신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2024. 4.), 현장 수요를 반영한 법정 의무교육 꾸러미 연수 과정의 개설을 지원하고, 배움누리터(원격연수 플랫폼)를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 현황 및 개설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2024.1.) 법정 의무연수의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법정 의무연수를 신설·확대하기 전에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 및

2) 【별첨】 개별 법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의무연수 현황(2025.12. 기준)

3) 교육부장관과 현장교원 간담회('24.1.),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성명서('24.3.), 교육부장관과 인천교육감 간담회('25.11.)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에 법정 의무교육을 반영하도록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 진 바 있음(2023.4.19. 시행, 법률 제18993호).⁴⁾

□ 다만, 개정안의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입법절차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법제
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장(입법과정에서의 협조)에서는 “정
부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제11조)⁵⁾, 의원발의법률안에 대
한 기관간 협조(제11조의3)⁶⁾ 및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 해소
(제11조의4)”⁷⁾ 등 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 해소를 위한

4)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5)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17. 12. 29., 2021. 12. 16.>

1. ~ 5. (생략)

② ~ ⑥ (생략)

6)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7)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사전 조정 절차를 규정·시행하고 있음.⁸⁾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법정의무연수의 신설·확대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입법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사전협의 규정과의 중복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 협의 또는 단순히 의견청취 절차” 정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770호)」이 계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8)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관 이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 소관)의 부처 간 이견 조정 처리 건수는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191건으로 5년간 약 64.7% 증가(기획재정부,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개별 법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의무연수 현황(2025.12. 기준)

연번	근거법령	교육명	소관부처	연간 시수
1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부	매년 1회 이상
2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	교육부	매년 1시간 이상
3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부	학기별 1회 이상
4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교육부	3년마다 15시간 이상
5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교육부	-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기초학력 보장	교육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한해 자정일 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7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교육부	매년 1회 이상
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1회 이상
9	청탁금지법 제19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1회 이상
10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1회 이상
11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1회 이상
1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	매년 1시간 이상
13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	매년 1시간 이상
1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매년 1시간 이상
15	장애인복지법 제25조2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보건복지부	매년 1시간 이상
16	다문화가족법 제5조	다문화 이해교육	여성가족부	-
17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 대면교육 포함
18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안전부	매년 1회 이상